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56
------	------

2020. 09. 0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9.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저임금,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무조건 등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를 2014.12.8. 개소하였으며, 그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네트

워크 구축 등에 기여하였음.

- 현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14.12.~현재까지)
- 주요 실적
 -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기여 : 권리구제312건, 노동상담 7,322건, 노동교육 755회/약 40,948명
 - 노동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업무협약 10건, 전국지자체지원노동센터협의회,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등 협의체 구성 운영, 법률/교육/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

나. 2014.4.2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기간 : 1차 2014.12.8.~ 2020.12.7.(3년간)

2차 2017.12.8.~ 2020.12.7.(3년간)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시설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 규모 : 220㎡(5층)
- 조직 : 2국 6팀(※ 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 별도 운영)
- ※ 休서울노동자쉼터 : 서초쉼터(강남), 북창쉼터(중구), 합정쉼터(강북), 미디어쉼터(상암),서틀쉼터(녹번)
- 운영인력 : 총37명(센터 23명 / 쉼터 14명)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0.12.8.~2023.12.7.(3년)
- 대 상 : 최근 3년간 노동복지업무 관련 분야에서 사업수행 실적이 있으며, 노동 분야 사업의 이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3,009,958천원(2021년 예산)
- 위탁업무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를 통한 노동인식 개선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동관련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모델 확산
 - 노동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의 위탁을 통한 노동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2014.4.24.)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¹⁾ 재위탁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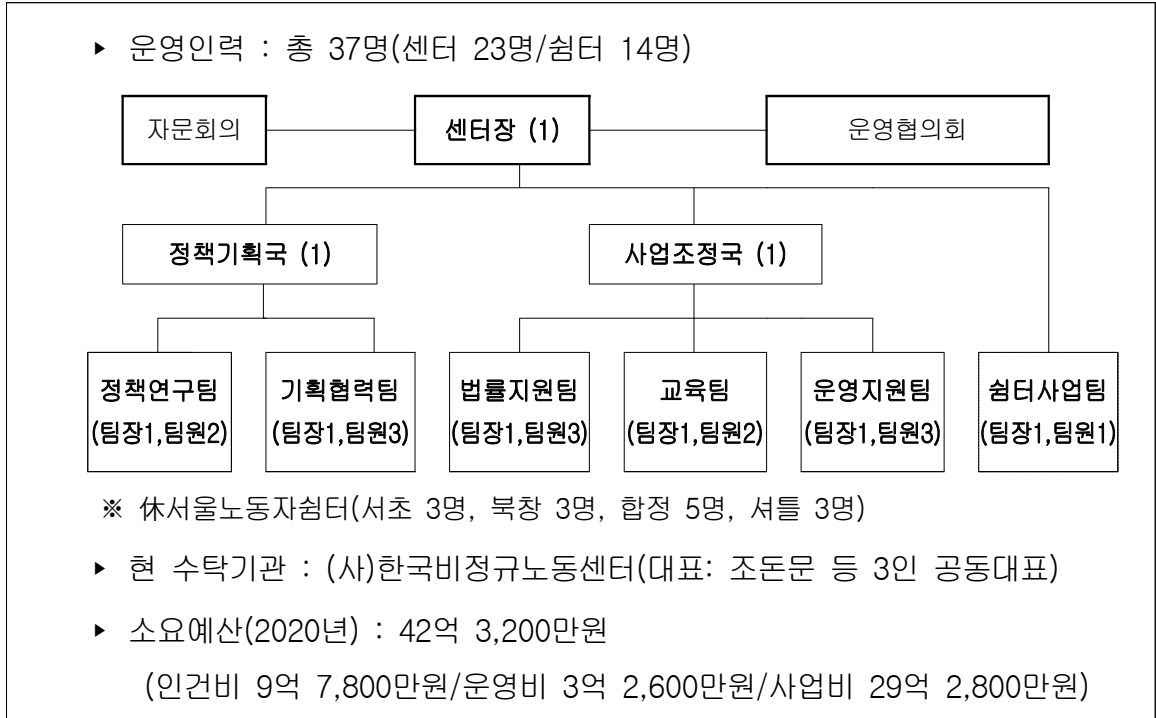
나.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연구,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4년 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요 >

- ▶ 시설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 ▶ 규모 : 220㎡
- ▶ 주요업무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를 통한 노동인식 개선
 -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등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 단서조항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센터를 통해 총 9,920건의 노동상담이 이뤄졌고,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에서의 노동상담에 대해 413건의 권리구제를 지원²⁾하였음.

< 노동권익센터 상담 및 권리구제 실적 >

(2020년 8월 기준,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상시 노동상담	3,337	3,458	3,125	9,920
취약계층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152	140	121	413

-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21건)을 수행하고,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노동교육 실시(312회, 50,383명),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구성 등을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음.

2) 상담 이후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인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음.

- 이밖에도 ‘이동노동자쉼터(5개소)’ 를 운영³⁾하는 등 노동취약계층의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다. 민간위탁 재위탁 타당성

-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교육훈련과 시민홍보를 통한 노동인식 개선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됨.
- 이에 따라 노동상담과 교육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동서비스 제공과 정책연구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14년 개소시부터 센터를 위탁운영해 왔으며⁴⁾,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활발한 노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재위탁의 당사자로서도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⁵⁾ 센터와 같은 시설형

3) 서초쉼터·합정쉼터(대리기사), 북창쉼터(책서비스기사), 미디어쉼터(방송종사자, 상암), 셔틀쉼터(셔틀버스기사, 녹번) 등 5개의 쉼터에 총 126,101명이 방문하였음(2016~2019년).

4) 2017년 12월 재계약

5)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위탁사무의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므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임.

-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이전보다 다소 하락했고(2017년 86.32점→2020년 83.91점), ▶ 분기별 예산집행률 오차에 대한 예산계획의 타당성 확보 필요, ▶ 다수의 이직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필요,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구매 달성률 설정 필요 등을 지적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구 분	계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개별사무 (사업성과 /지도점검이행노력)	사용자만족도
2017년 평가결과	86.32/100	30.74/37	43.45/48	12.13/15
2020년 평가결과	83.91/100	32.56/39	37.98/46	13.37/15

- 또한 서울시는 지역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구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2022년까지 25개소 조성, 현재 20개소), 센터는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노동허브기관으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센터는 위탁사무의 증가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 예산은 30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8.9% 대폭 감소할 예정인 바, 센터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최근 3년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민간위탁금	2,563	2,454	2,806	2,694	3,064	2,844	4,232
인건비	630	586	777	740	910	870	978
운영비	379	375	366	310	320	291	324
사업비	1,554	1,493	1,663	1,643	1,834	1,683	2,928

- 2020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콜센터 방역예산으로 5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56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저임금,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무조건 등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를 '14.12.8. 개소하였으며, 그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하였음

- 현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14.12.~현재까지)
- 주요 실적
 -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기여 : 권리구제312건, 노동상담 7,322건, 노동교육 755회/약 40,948명
 - 노동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업무협약 10건, 전국지자체지원노동센터협의회,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등 협의체 구성 운영, 법률/교육/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

나. '14.4.2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기간 : 1차 '14.12.8~'17.12.7.(3년간) / 2차 '17.12.8~'20.12.7(3년간)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시설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 규모 : 220㎡(5층)
- 조직 : 2국 6팀(※ 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 별도 운영)
 - ※ 休서울노동자쉼터 : 서초쉼터(강남), 북창쉼터(중구), 합정쉼터(강북), 미디어쉼터(상암), 서틀쉼터(녹번)
- 운영인력 : 총37명(센터 23명 / 쉼터 14명)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0.12.8.~2023.12.7.(3년)
- 대 상 : 최근 3년간 노동복지업무 관련 분야에서 사업수행 실적이 있으며, 노동 분야 사업의 이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3,009,958천원('21년 예산)
- 위탁업무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를 통한 노동인식 개선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동관련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한 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모델 확산
 - 노동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의 위탁을 통한 노동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1월)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조례 2조4)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노동정책담당관 권익개선팀 최은정(☎ 2133 - 5421)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